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6
----------	-------

발의연월일 : 2026. 7. 28.

발 의 자 : 송기현 · 전용기 · 김 윤
허 영 · 김한규 · 주철현
이연희 · 이광재 · 이주희
임미애 · 복기왕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자동차의 전동화 양상,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 제작 증가와 연계하여 자동차가 차로 유지,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제어하면서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는 첨단화된 운전자 제어보조장치에 대한 기술개발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대한 정의나 제작·운행과 관련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인 반면,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WP.29)에서는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제 조화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

에서도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운전자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 나.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하여 자동차제작사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1호의3 신설).
- 다. 자동차제작사등이 자동차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를 장착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계획의 수립·제출 등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13 신설).
- 라.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안전관리체계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79조제5호의5 및 제81조제16호의7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운전자제어보조장치”란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30조의1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13(운전자제어보조장치의 장착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를 장착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검증,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2. 차로변경, 운전자모니터링 등 운전자 제어와 관련된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3. 운전자제어보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고 관리, 보고 등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것

4. 구매자에게 운전자를 보조하는 장치라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자동차제작자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해당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변경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들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들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거부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준수 사항 조사에 관한 업무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기준과 절차, 제4항에 따른 조사 업무의 대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에 제5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5. 제3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제어보조장치 장착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제어보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자

제81조에 제16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7. 제30조의1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자제어보조장치 장착을 위한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사등이 운전자제어보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1. · 1의2. (생략)

<신설>

2. ~ 9.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30조의1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13(운전자제어보조장치
의 장착 등) ①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에 운전자제어보조
장치를 장착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검증,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2. 차로변경, 운전자모니터링
등 운전자 제어와 관련된 구
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
준에 적합할 것

3. 운전자제어보조장치가 장착
된 자동차의 사고 관리, 보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것

4. 구매자에게 운전자를 보조하는 장치라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해당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변경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의4. (생략)

<신설>

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 제작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준수 사항 조사에 관한 업무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기준과 절차, 제4항에 따른 조사 업무의 대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벌칙) -----

-----.

1. ~ 5의4. (현행과 같음)

5의5. 제3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제어보조장치 장착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제어보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6. ~ 19. (생략)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6의6. (생략) <u><신설></u> 17. ~ 28. (생략)	<u>판매한 자</u> 6. ~ 19. (현행과 같음) 제81조(벌칙) ----- ----- ----- -----. 1. ~ 16의6. (현행과 같음) <u>16의7. 제30조의1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u> 17. ~ 28. (현행과 같음)
--	---